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4-25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6237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7. 7. 13.
판 결 선 고	2017. 9.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6,799,190원 및 농어촌특별세 3,190,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4-25

가. 원고는 2012. 12. 28. 주식회사 [redacted](이하 '[redacted]지주'라고 한다)를 흡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하면서 [redacted]지주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redacted](이하 '[redacted]팜'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54,000주(총 발행주식의 90%에 해당함,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함으로써 [redacted]팜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나. 피고는,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에 따라 원고가 위와 같이 [redacted]팜의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redacted]팜 소유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3호, 제10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상 가액에 주식비율(54,000주/60,000주)를 곱한 금액인 1,224,680,8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중과기준세율(2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6,799,190원(가산세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3,190,040원(가산세 포함)을 합산한 39,989,230원을 원고에게 부과 · 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1, 3-2호증, 을 제1,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간주된 것이므로 이 경우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데 위 규정에 따라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빼면 그 세율이 '0'이 되어 취득세를 면제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4-25

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취득세 자체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취득세 등 39,989,23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은 합병에 따라 직접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소유한 제3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어 제3법인 소유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 논거는 아래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redacted]지주와 합병하면서 [redacted]팜의 주식을 취득하여 [redacted]팜의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간주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간주취득세의 경우,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구 지방세법의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7항은 합병일 현재 소비성서비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4-25

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간 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상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간의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취득세를 면제대상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합병으로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어 간주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합병을 원인으로 과세물건인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나) 취득세 감경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일반 규정인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만을 들면서 간주취득세 세율을 정한 제15조 제2항을 언급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간주취득세 세율은 제15조 제2항에 따라 별도로 정해질 뿐 제15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경대상이 아님을 명시한 것이다. 따라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위 규정은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산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다) 법인을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제3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위 제3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제3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법인이 '합병에 따라 양수한 재산' 내지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규정인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과 구 지방세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제3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0%를 보유하고 있던 법인이 피합병법인과의 합병 과정에서 제3법인의 발행주식 1%를 추가로 취득함에 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4-25

라 과점주주가 되어 제3법인 소유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위 제3법인 소유의 부동산등을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이라고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강효원

판사 김현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4-25

관계 법령

■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과세표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4-25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3.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4항에 따른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4-25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단서 생략)